

<EU의 신GSP 계획>

대EU 수출정책 재검토 불가피

EU집행위는 신GSP 계획(95 2004)중 제1기(95.1.1 97.12.31), 3년간 적용할 제1기 운용계획(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국에 초안을 송부하였으며 이 안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향후 2개월내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시기는 95년 1월1일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적용품목은 일반공산품(CN25류 96류)이다.

GSP 공여방식에 있어서도 특정품목의 일정한도에 대해서만 무관세 혜택을 부여해 온 현행제도를 수정하여 국별한도를 철폐하고 전 공여품목을 민감, 준민감, 비민감품목으로 구분, 관세율을 차등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s)은 최혜국(MFN) 관세율의 80%가 적용된다. 이에에는 반도체·TV·VTR·음향기기 등 주요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류, 손목시계류, 피아노, 화공제품류 등이 포함된다. 최혜국관세율은 EU관세율중 협정관세율(Conventional duty rate)을 의미하며 한국은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준민감품목 (Semi-Sensitive products)은 최혜국(MFN) 관세율의 40%가 적용된다. 이에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선통신기기, 조명기기, 재봉기기, 기타악기류, 시계부품 등이 포함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종전 민감품목에서 준민감품목으로 조정되었다.

비민감품목 (Non-Sensitive products)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에에는 완구, 가구, 플라스틱, 타이어, 항공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된다. 완구는 종전 민감품목에서 비민감품목으로 조정되었다.

또 EU집행위는 수혜국의 경제발전지수(Development index)와 상대적 특화도(Relative Specialization)를 종합적으로 고려, 선발개도국, 신흥개도국 등을 GSP수혜에서 점진적으로 제외시키자는 품목별·국별 졸업제도를 제안했다.

EU는 한국·홍콩·싱가폴 등 1인당 GNP가 6000달러 이상인 선발개도국의 일부 품목을 97년 1월1일 이후 졸업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졸업대상품목에 대해 EU는 95년에는 GSP마진의 100%를, 96년에는 50%를 공여하고 97년 1월1일 이후로는 공여를 완전중단하는 점진적 졸업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97년 졸업대상품목인 마이크로오븐렌지(MFN관세율 5.1%)의 경우, 이번 계획에는 비민감품목으로(종전에는 공여졸업품목) 분류되어 95년에는 무관세의 혜택을 받으나 96년에는 MFN 관세율의 50%인 2.6%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대다수 회원국들은 현행 수혜국중 1인당 GNP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GSP수혜에서 완전히 제외시키자는 국별 졸업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1인당 GNP는 EU의 초번국인 포르투갈의 1인당 GNP(91)인 6000ECU(약 7500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품목별 원칙대신 국별 졸업원칙이 도입될 경우 95년부터 홍콩 및 싱가폴은 완전히 제외되며,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품목별·국별 졸업방식의 보완장치로 경제발전정도와 관계없이 특정국 특정품목의 대EU 수출규모가 전 수혜국 수출규모의 일정기준(15 25%)을 초과할 때, 해당품목의 GSP공여를 중단하는 연계보조장치를 도입했다.

중국(화공제품·신발·유리 및 세라믹제품), 칠레(비료), 브라질(수송장비류 및 지류)가 적용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은 제외되었다.

또 EU는 수혜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때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GSP공여 중단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 EU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조치를 취할 때
- UR의 시장접근 의무조항의 불이행 국가
- 노동착취 관행 또는 죄수를 이용한 생산품의 수출시
- 행정적 협력의 불이행 또는 기만행위
- 마약의 수출 및 통관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및 돈세탁국가

EU집행위는 위기사항에 대한 제소를 토대로 심사후 중단을 결정하며 중단조치는 1년간 적용되며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수혜국산 특정제품의 수입증으로 역내산업의 유사제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국의 요청 또는 집행위의 자체발의에 의해 해당품목에 대해 언제라도 GSP공여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사회조항, 인권보장에 충실한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 GSP를 공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중이다.

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 제88호(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노조설립 등)와 제103조(연소자의 고용금지)의 기본정신과 국제열대림 보호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한 국가에 대해 특별인센티브를 공여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97년 1월1일부터 실시되며 해당국은 97년 이전에 집행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며 수입통관시 관련서류를 첨부·제시하여야 한다.

특혜공여기준에 부합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GSP마진(모든 수혜국 동일)에 관련비용을 감안, 특별 GSP마진을 추가공여하나 한국 등 선발개도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집행위의 제안이 채택되면, 한국은 95 96년 2년간은 현행 GSP제도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97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품목이 품목별 졸업 제도에 의거 GSP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수로는 총 917개 품목군(CN 4단위 이상 분류시)중 97년 이후 GSP공여가 중단되는 품목은 총 519개 품목으로 전체의 56.5%에 해당된다.

졸업대상품목의 총수출금액은 83억달러로 전체 수출 94.2억달러의 88.2%를 차지한다.

수혜품목 및 품목별 수혜관세율

일반공산품 (CN #25-#96) (95.1.1 97.12.31)

제25류 제29류 무기화합품 및 유기화합물 등

품 목	품 명	수 혜 구 분		관 세 율		비 고
		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제25류	일부 광물성 생산품	N	N	무세 4.1	무세	수혜(97)
제27류	※ 광물성원료, 광물류와 가공품	S	N			수혜(97)
제28류(1)	무기화합품, 희토류금속 등					수혜(97)
2804-70-00	황린(Yellow phosphorous)	N	SS	6.0	2.4	수혜(97)
2805-21-00	갈슘	N	S	5.7	4.6	수혜(97)
2805-30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N	SS	2.7 12.0	1.1 4.8	수혜(97)
2814	무수암모니아, 암모니아수	S	S	11.0	8.8	수혜(97)
2815	수산화나트륨 및 칼륨, 과산화 나트륨 및 칼륨	S	S	8.0 12.0	6.4 9.6	수혜(97)
제28류(2)	무기화합품 및 희토류금속 등					수혜(97)
2817	산화 및 과산화 아연	N	S	11.0	8.8	수혜(97)
2818	인조커런덤, 산화 및 수산화알루미늄	N	S	5.2 5.7	4.2 4.6	수혜(97)
2819	산화 및 수산화 크롬	S	S	13.4	10.7	수혜(97)
2823	산화티타늄	N	S	6.0	4.8	수혜(97)
2825-10-00	히드라진과 히드록실 아연	N	SS	6.0	2.4	수혜(97)
2825-80-00	산화 안티몬	N	S	11.0	8.8	수혜(97)
2827-10-00	염화 암모늄	S	S	6.6	5.3	수혜(97)
2827-32-00	알루미늄 염화물	N	SS	6.6	2.6	수혜(97)
2827-38-00	※ 바륨 염화물	S	N	5.7	무세	수혜(97)
2827-60-00	요드화물과 산화요드화물	N	S	6.9	5.5	수혜(97)
2830-10-00	황화나트륨	N	S	6.9	5.5	수혜(97)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폰산염	N	S	12.0	9.6	수혜(97)
2834-10-00	아질산염	N	SS	7.0	2.8	수혜(97)
제28류(3)	무기화합품 및 희토류금속 등					수혜(97)
2835	포스피네이트, 인산염 등	S	S	5.3 10.0	4.2 8.0	수혜(97)
2836-20-00	탄산 이나트륨	S	S	10.0	8.0	수혜(97)

품 목	품 명	수 해 구 분		관 세 율		비 고
		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제28류(3)	무기화합품 및 히토류금속 등					수혜(97)
2836-60-00	탄산 바륨	S	S	8.0	6.4	수혜(97)
2841-60-10	과망간산 칼륨	N	S	6.9	5.5	수혜(97)
2841-30-00	※ 중크롬산 나트륨	S	N	12.4	무세	수혜(97)
2849-20-00	탄화 규소	N	S	8.0	6.4	수혜(97)
2849-90-30	탄화 텅스텐	N	S	8.0	6.4	수혜(97)
2850-00-70	규화물	N	S	8.8	7.1	수혜(97)
	※ 이상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28류의 기타 전제품	N	N	-	무세	수혜(97)
제29류(1)	유기화합물					수혜(97)
2902-30	※ 톨루엔	S	N	8.0	무세	수혜(97)
2902-50	※ 스티렌	S	N	6.0	무세	수혜(97)
2902-60	※ 에틸벤젠	S	N	4.6	무세	수혜(97)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유화유도체	S	S	7.4 12.0	5.9 9.6	수혜(97)
2904-20	니트로와 니트로소화유도체	N	SS	7.1 8.0	2.8 3.2	수혜(97)
2905	비환식 알콜 등	S	S	6.6 13.0	5.3 10.4	수혜(97)
2907-15-00	나프톨과 그 염	N	S	14.0	11.2	수혜(97)
2907-22-10	하이드로 퀴논	S	S	7.6	6.1	수혜(97)
2909	에테르, 에테르알콜 등	S	S	6.6 12.0	5.3 9.6	수혜(97)
2912-41-00	바닐린 알데히드	N	S	8.0	6.4	수혜(97)
2914-11-00	아세톤	S	S	6.6	5.3	수혜(97)
제29류(2)	유기화합물					수혜(97)
2914-21-00	장뇌	S	S	7.1	5.7	수혜(97)
2914-22-00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N	SS	6.9	2.8	수혜(97)
2915	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부수물 등	S	S	4.2 16.8	3.4 13.4	수혜(97)
2916-11-10	아크릴산	N	SS	8.0	3.2	수혜(97)
2916-12-00	아클리산의 에스테르	N	S	10.0	8.0	수혜(97)
2916-14-00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N	SS	7.4	3.0	수혜(97)
2916-39-00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 등의 기타	N	S	7.1	5.7	수혜(97)
2917-11-00	옥살산	S	S	7.8	6.2	수혜(97)
2917-12-10	아디프산 및 그염과 에스테르	N	SS	13.0	5.2	수혜(97)
2917-14-00	무수말레산	N	SS	6.9	2.8	수혜(97)
2917-32-00	오르토폴탈산 디옥틸	N	SS	13.0	5.2	수혜(97)
2917-35-00	무수프탈산	N	SS	13.0	5.2	수혜(97)
2917-36-00	테레프탈산과 그염	N	S	10.0	8.0	수혜(97)
제29류(3)	유기화합물					수혜(97)
2917-37-00	테레프탈산 디메틸	N	SS	10.0	4.0	수혜(97)
2918-11-00	락트산	S	N	6.5	무세	수혜(97)
2918-14-00	시트르산	S	S	13.0	10.4	수혜(97)
2918-15-00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N	S	8	6.4	수혜(97)
2918-21-00	살시실산의 그염	N	SS	8.2	3.3	수혜(97)
2918-22-00	오르토토폴탈산리실산	S	N	12.0	무세	수혜(97)
2918-29-10	술폰살시산염, 에스테르 등	N	SS	7.6	3.0	수혜(97)
2921	아민 관능화합물	S	S	5.7 12.0	4.6 9.6	수혜(97)
2922	기타 무기산의 에스테르	S	S	6.3 15.0	5.0 12.0	수혜(97)
2923-10-10	염화콜린	S	S	7.4	5.9	수혜(97)
2924-10-00	비환식 아미드	N	SS	7.6	3.0	수혜(97)
2924-21-00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등	N	SS	6.9	2.8	수혜(97)
2924-29-30	파라세타몰	S	S	7.4	5.9	수혜(97)
제29류(4)	유기화합물					수혜(97)
2924-29-90	기타 아세트 이닐리드	N	SS	7.4	3.0	수혜(97)
2926-10-00	아크릴로 니트릴	S	S	13.0	10.4	수혜(97)
2927	디아조, 아조, 아족시 화합물	N	SS	7.1	2.8	수혜(97)

품 목	품 명	수 해 구 분		관 세 율		비 고
		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제29류(4)	유기화합물					수혜(97)
2929-10-00	이소시아네이트	N	SS	13.0	5.2	수혜(97)
2930-40-00	메티오닌	N	SS	7.6	3.0	수혜(97)
2930-90-10	시스테인 및 부속물	S	S	7.6	6.1	수혜(97)
2930-90-80	유기황화합물의 기타	N	SS	7.6	3.0	수혜(97)
2932-21-00	쿠마린, 메틸 및 에틸쿠마린	S	S	7.6	6.1	수혜(97)
2933-61-00	멜라민	S	S	8.0	6.4	수혜(97)
2935	술폰아미드	S	S	6.6	5.3	수혜(97)
2936-25-00	비타민 B6와 그 부산물	N	SS	4.3	1.7	수혜(97)
2936-27-00	※ 비타민 C와 그 부산물	S	SS	4.0	1.6	수혜(97)
2936-22	※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S	N	5.0	무세	수혜(97)
2936-28	※ 비타민 E와 그 유도체	S	N	5.0	무세	수혜(97)
제29류(5)	유기화합물					수혜(97)
2936-29	※ 기타 비타민과 그 유도체	S	N	5.0	무세	수혜(97)
2939-21-90	키닌 등의 기타	N	SS	9.6	3.8	수혜(97)
2939-29-00	기니의 알칼로이드 등의 기타	N	SS	9.6	3.8	수혜(97)
2939-90-90	식물성 알칼로이드 등의 기타	N	SS	8.0	3.2	수혜(97)
2940-00-90	당류 등의 기타	N	SS	20.0	8.0	수혜(97)
	※ 이상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29류의 기타 전제품	N	N	-	무세	수혜(97)

제30류 제32류 의료용품 · 염색제 · 페인트 등

품 목	품 명	수 해 구 분		관 세 율		비 고
		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제30류	의료용품					수혜(97)
3001-90-91	해파린과 그 염	S	S	12.0	9.6	수혜(97)
3005-90-31	※ 거어즈	S	N	6.6	무세	수혜(97)
	※ 이상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30류의 기타 전제품		N	-	무세	수혜(97)
제31류	비료					수혜(97)
3101-00-00	※ 동식물성 비료	S	N	무세	무세	수혜(97)
3102	질소비료	S	S	무세 11	무세 8.8	수혜(97)
3103	인산비료	S	S	무세 4.8	무세 3.8	수혜(97)
3104	칼륨비료	N	SS	무세	무세	수혜(97)
3105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S	S	무세 8.8	무세 7.0	수혜(97)
제32류	유연, 탄닌, 염료, 페인트 등	N	N	무세 10	무세	수혜(97)
3204	합성유기 착색제	N	SS	6 10	2.4 4	수혜(97)
3206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N	S	4.9 6.9	3.9 5.5	수혜(97)

제33류 제35류 정유 · 비누 · 단백질계 물질

품 목	품 명	수 해 구 분		관 세 율		비 고
		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등	N	N	무세 11.0	무세	수혜(97)
제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등	N	N	4.6 7.6	무세	수혜(97)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등					수혜(97)
3501	카세인 등	S	S	2.0 14.0	1.6 11.2	수혜(97)
3503	젤라틴	S	S	5.3 12.0	4.2 9.6	수혜(97)
3507	효소 등	N	SS	6.3	2.5	수혜(97)
	※ 이상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35류의 기타 전제품	N	N	-	무세	수혜(97)

제36류 38류 화약류·사진용재료·각종화학제품

품 목	품 명	수 해 구 분		관 세 율		비 고
		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제36류	화약류 등	N	N	5.7 10.0	무세	수해(97)
제37류	사진용 또는 염화용의 재료	N	N	무세 7.6	무세	수해(97)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수해(97)
3802	활성탄 등	S	S	5.7 6.3	4.6 5.0	수해(97)
3817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트탈렌	S	S	6.3	5.0	수해(97)
	※ 이상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38류의 기타 전제품	N	N	무세 13.0	무세	수해(97)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품 목	품 명	수 해 구 분		관 세 율		비 고
		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	S	S	12.5	10.0	졸업(97)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N	S	12.5	10.0	졸업(97)
3903	스티렌의 중합체	S	S	12.5	10.0	졸업(97)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	S	S	12.5	10.0	졸업(97)
3906-10-00	폴리메타 크릴산메틸	N	SS	12.5	5.0	졸업(97)
3907-10-00	폴리아세탈 수지	N	SS	7.6	3.0	졸업(97)
3907-6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N	S	8.0	6.4	졸업(97)
3907-99	아세탈수지 등의 기타	N	S	8.0	6.4	졸업(97)
3908	폴리아미드	N	SS	8.0	3.2	졸업(97)
3920	플라스틱제의 판 등	S	S	5.7 13.0	4.6 10.4	졸업(97)
3921-90-19	플라스틱제 등의 기타					
		S	S	13.0	10.4	졸업(97)
	※ 이상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38류의 기타 전제품	N	N	무세 13.0	무세	졸업(97)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품 목	품 명	수 해 구 분		관 세 율		비 고
		현행	개정	현 행	개 정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무세 10.0	무세	졸업(97)
4010	고무제 콘베이어용 벨트 등	N	SS	10.0	4.0	졸업(97)
4011	고무제 공기타이어(신품)	S	S	무세 5.8	무세 4.6	졸업(97)
4012	고무제 공기타이어(재생품)	S	S	무세 5.8	무세 4.6	졸업(97)
4013	고무제의 인너 튜브	S	S	5.8	4.6	졸업(97)
	※ 이상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38류의 기타 전제품			무세 10.0	무세	졸업(97)

주) 수해품목리스트는 EU의 품목분류방식인 CN(Combined Nomenclature/통합분류)번호 순임

※ CN분류제도 : EU가 HS분류체계를 기초로 별도로 정한 품목분류방식으로 8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Heading 6단위는 HS와 동일
(나머지 2단위는 EU특성에 맞게 조정)

- 수해관세율은 현행 EU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향후 EU의 관세율 조정에 따라 변동됨
- 비교난의 「졸업(97품목)」은 97년 1월1일 이후 졸업예정품목으로 이 품목의 GSP마진은 95년에는 100%, 96년에는 50%로 감축
- 품명난의 「※표 제시품목」은 현행제도보다 유리하게 조정된 제품

약어) S-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SS-준민감품목(Semi-sensitive products), N-비민감품목(Non-Sensitive products)

졸업(97) : 97.1.1 이후 졸업예정품목

수해(97) : 97년에도 수해가 가능한 품목